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남창진, 박승진,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전병주,
최재란, 한·신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 이동편의 증진과 가족 간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누적 대여 건수가 2억 건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자전거 이용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추가 신설함 (안 제12조의3 제2항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7. (생략)</p> <p><u><신 설></u></p> <p>8.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7. (현행과 같음)</p> <p>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다자녀 가족</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제2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제2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